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
발 의 자 : 강선우 · 한병도 · 한정애
임호선 · 윤준병 · 김영호
서미화 · 김 윤 · 강준현
허종식 · 안규백 · 허 영
서삼석 · 한민수 · 권향엽
정준호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

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~ ③ (생 략)	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.</u>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9조(비용 보조) (생 략)	제59조(비용 보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